

제28.15호

행정 명령

**뉴욕주 비상 사태 선포**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s Act) 362조 및 365조(42 U.S.C §§ 362 및 365, 2021년 8월 2일 미 질병통제센터(United States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국장령에 따른 42 C.F.R. § 71.40 시행 규정)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며 전염가능한 질병이 존재하는 곳에서 온 사람에 대한 공중 보건 평가 및 관리 중단 명령("42장 명령")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42장 명령은 (그들의 출신국과 상관없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여행하는 "보호 대상이 되는 비시민"이 미국 육지와 인접한 해안 국경에서 또는 그 근처의 입국 항구 또는 미국 국경 순찰소에 모이는 곳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42장 명령의 실행 이후에도 올해 초 몇 달 동안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민자가 다수였으며, 2023년 5월 기준 뉴욕시의 경우에만 남쪽 국경에서 36,738명의 이민자가 현재 임시 주거 중이며, 2023년 1월부터 이러한 숫자가 12,279명이 증가 하였으며, 지난 주에만 추가 1,578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3년 5월 11일 42장 명령이 만료된 이후 수천 명이 추가로 뉴욕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현재 뉴욕시에서만 65,500명 이상의 이민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 및 기타 뉴욕주 내 지방 정부로서 이민자 수천 명의 주거와 기타 기본적인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도적 요구를 지원할 인프라, 시설, 자원이 부족한 경우 연방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뉴욕주와 뉴욕시에서 쉼터를 찾는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미 존재하는 대규모 인도적 사태를 악화시키고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비상사태를 초래하여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생명이나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2-B조 28항 제28.13항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28호에 선언된 주 재난 비상 사태를 2024년 8월 1일 목요일까지 연장하며 이로써, 행정명령 28.13에 계속되는 행정명령 28에 포함된 조건, 약관 및 효력 정지를 이어갑니다.

이천이십사년 칠월 이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